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제안이유

-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동 위임사항 중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구 위임사무 조정
 - 환경위생과(시) → 환경위생과(구청)
 -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 출입·검사·수거 등
 -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 과태료 처분
 - 사회복지과(구청) → 여성복지과(시)
 -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·감독
 -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 보조
- 동 위임사무 조정

- 사회복지과 → 민원허가과
 - 호적과태료 부과·징수(단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·사망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)
- 구 위임사무중 단위업무 조정
- 여성복지과
 -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 → 아동의 안전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
 -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 조치 →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의 출입, 검사, 수거를 구에서 직접 하는지 ○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, 아동 주무 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음 ○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검토하겠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99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동 위임사항 중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구 위임사무 조정
 - 환경위생과(시) → 환경위생과(구청)
 -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 출입·검사·수거 등
 -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 과태료 처분
 - 사회복지과(구청) → 여성복지과(시)
 -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·감독
 -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 보조
- 동 위임사무 조정
 - 사회복지과 → 민원허가과
 - 호적과태료 부과·징수(단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·사망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)
- 구 위임사무중 단위업무 조정
 - 여성복지과
 -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 → 아동의 안전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
 -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 조치 →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별표중 1.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단 위사무명란 및 근거법 적용란 중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3호의 단위사무명란 중 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고,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.
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기관
여성복지과	1. 아동보호(다만 공립·법인 및 단체 보육시설은 제외)	가. 아동의 안전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(영유아 보육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•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	구청장

		나.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복지법 제10조 •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•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, 제7조 내지 제9조 	
환경위생과	3.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의 가목 내지 나목 이외의 식품소분·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<적용대상> 신고대상 외 식품 판매업소	가. 출입·검사·수거 등 나. 과태료 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위생법 제17조 • 동법 제78조 • 동법시행령 제54조 	구청장

제2조의 별표중 2. 동 위임사항의 징수과란 다음에 민원허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란을 삭제하며,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민원허가과	1. 호적과태료에 관한 사항	가. 호적과태료 부과·징수(다만 거주지 동사무에서 출생, 사망 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)	• 호적법 제132조의2	동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

현행					조정				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	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여성복지과	1. 아동보호	가.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	• 아동복지법 제9조, 제14조, 제16조	구청장	여성복지과	1. 아동보호 (다만 공립·법인 및 단체 보육시설은 제외)	가. 아동의 안전교육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보고(영유아보육시설)	•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•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	구청장
		나.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 조치	•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	나. 보호를 필요 하는 아동의 보호 조치			• 아동복지법 제10조 •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•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, 제7조 내지 제9조		
	3. 노인복지	다. (생략)			3. 노인복지	다. (현행과 같음)	가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구청장
		가. (생략)	(생략)	구청장			<삭제>	<삭제>	
		나.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 감독	• 노인복지법 제42조						
		다.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보조	• 노인복지법 제47조 • 동법시행령 제24조						
환경위생과	1~2. (생략)			구청장	환경위생과	1~2. (현행과 같음)			구청장

현행					조정				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기관	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기관
	<신설>					3.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5호의 가목 내지 나목 이외의 식품 소분·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<적용대상> 신고 대상 외 식품판매업소	가. 출입·검사·수거 등 나. 과태료처분	· 식품위생법 제17조 · 동법 제78조 · 동법시행령 제54조	
	3~6. (생략)					4~7. (현행과 같음)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2. 동 위임사항

현행					조정				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기관	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기관
민원허가과	<신설>			동장	민원허가과	호적과태료에 관한 사항	가.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(다만 거주지동사무소	· 호적법 제132조의2	동장

현 행					조 정				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	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사회복지과	1. 호적과태 료에 관 한 사항 2~3. (생 략)	가. 호적과태 료 부과 징수(단 거 주지 동사 무소에 출 생, 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)	• 호적법 제 132조의2	동 장	사회복지과	<삭제>	예서출생, 신고하는 자에 한 함) <삭제>	<삭제>	동 장
						1~2. (현행 과 같음)			